

한국조경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(2021. 9. 1. 개정)

1. 목적과 적용 대상

- 1)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조경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.
- 2)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조경학회지의 논문은 '연구논문'과 '설계논문'으로 나뉜다. '설계논문'도 '연구논문'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연구 실적물이다.

2. 심사위원 선정

- 1) 논문 1편 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.
- 2)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심사 진행에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위촉하고, 책임편집위원이 전공, 연구 분야,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- 3)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- 4) 학회는 소정의 심사료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한다.
- 5)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 제척 희망자 2인을 지정할 수 있다.

3. 심사 방식

- 1)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익명을 유지한다.
- 2) 심사위원은 심사서의 항목을 바탕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①현 상태 게재, ②수정 후 게재, ③수정 후 재심, ④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.
- 3)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원고 제출 시 지정한 논문 유형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한다.
A형(실험과 데이터 중심의 정량적 논문), B형(역사/이론 기반의 정성적 논문 또는 설계형 논문)
- 3)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', '게재 불가'로 평가할 경우, 심사위원은 그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한다.
- 4) '수정 후 재심'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수정한 논문을 재심사한다.
- 5)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원고 수령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 20일이 경과한 뒤에도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,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교체한다.

4. 게재 여부의 판정

- 1)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.
- 2)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'현 상태 게재' 또는 '수정 후 게재'로 평가받은 논문은 '게재'로 판정하며, 그 밖의 경우는 아래 표에 따라 판정한다.
- 3) '수정 후 재심'에 따른 재심은 '현 상태 게재', '수정 후 게재', '게재 불가' 중 하나로 평가한다.

현 상태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게재 불가	판정
○○○				게재
○○	○			게재
○○		○		게재
○○			○	게재
○	○○			게재
○	○	○		게재
○	○		○	게재
○		○	○	수정 후 재심
	○○○			게재
	○○	○		게재
	○○		○	게재
	○	○○		수정 후 재심
	○	○	○	수정 후 재심
	○		○○	불가
		○○○		수정 후 재심
		○○	○	수정 후 재심
		○	○○	불가
			○○○	불가

5. 판정 이후의 사항

- 1) 투고자는 심사 결과와 판정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- 2) 심사 결과와 판정과 관련해 투고자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,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경유해 답변한다.
- 3) 투고자는 심사 결과와 판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판정 권한을 가진다.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대해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4)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, 원고의 교정과 교열 등과 관련해 투고자에게 최종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